

서울고등법원 2016. 2. 26 선고 2015나2055098 판결 [연대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2. 26 선고 2015나205509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10760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B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 선고 2016. 2. 26.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10760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4.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615,97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말미(제5면 밑에서부터 3번째줄 [인정근거])에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증거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에 변조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인정근거로 삼는 것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부분만으로 충분하고, 피고가 변조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위 사실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중 "피고 주장의 요지 2)" 중 마지막 줄(제6면 제16행)의 "대신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를 "대신 변제한 것이거나 또는 주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전달받아 다시 원고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2. 당사자들의 주장")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중 "가. ⑤항" 말미(제7면 제11행)에 "(피고가 주채무자들로 이자를 전달받아 다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를 추가하고, "가항" 말미(제7면 밑에서부터 3번째 줄)에 "(갑 제1호증과 을 제5호증에 각 기재된 차용금액은 원고가 주채무자들에게 대여한 200,000,000원에 피고가 주채무자들에게 대여한 20,000,000원을 합한 220,000,000원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채권까지 스스로 채무자가 되거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각 문서의 차용인이나 연대보증인란에서 피고의 성명을 삭제함이 마땅하다)"를 추가하며, 제8면 제5행의 "봄이 상당하고," 뒤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부속약정서(을 제6호증의 2)에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2억 원'은 주채무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원리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 전액을 연대보증하였다는 피고가 차용일인 2011. 1. 20.로부터 22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실질적으로 변제하지 않다가 2012. 11. 29. 제3자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원고에게 보내와 2억 원에 한하여만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면1), 원고가 상환책임의 범위를 다투었을 만함에도, 불과 6일 뒤인 2012. 12. 5. 쌍방의 합의로 작성되었음에 다름이 없는 부속약정서(을 제6호증의 2)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없이 피고가 제안한 대로 '2억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원·피고 사이에 책임한도가 원리금 2억 원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입증이 없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계산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의 한도가 2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로 25,625,808원을 변제한 후에도 그 변제금을 공제함이 없이 2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한도액은 여전히 2억 원으로 본다)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은 2014. 9. 1.을 기준으로 304,565,972원에 달하여 이미 위 한도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이므로 피고는 위 한도액과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참조)2),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소정의 연 5%를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그 이행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금의 이행을 구한 시기인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4.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3)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장윤석

판사조진구

- 1) 소장 기재 청구원인, 당심에서 진술된 2015. 8. 31.자 원고의 참고서면
- 2) 원고가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에는,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 3)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것이다.